

=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2. 14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12. 15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6.12.22) 상정 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(양종호 기획감사실장)**

**가. 제안이유**

- 2006. 12.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복식 부기 전담인력,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전담인력,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에 대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현장승인 권고에 의거 2008. 12. 31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 별표 2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함

**나. 주요골자**

- 존속기한연장 : 2006. 12. 31 → 2008. 12. 31
- 존속기한 연장 대상
  -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(7급1명, 8급1명)
  - 소나무 재선충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(7급)
  -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(8급)

**3. 관계법령**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
-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
-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을 현재 동 업무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업무이므로
- 2008. 12. 31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음**

**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